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위원회 구성 변경, 위원장 인사청문 실시 등 >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956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2
IV . 검토의견	3
1. 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3조제3항 등)	3
2.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안 제3조제6항)	7
3.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건 완화(안 제13조제1항)	1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문수 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2. 6.

3. 회부연월일 : 2025. 2.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등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민 1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 지명이나 추천 비중이 지나치게 크고, 위원장의 자질 및 직무적합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건이 국민 10만명 이상의 동의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로 국민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 지명 또

는 추천하는 위원의 수를 각각 7명, 3명으로 축소하고 학생·청년 단체와 학부모 단체가 각각 위원 2명을 추천하도록 함. 그리고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을 실시하며,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위한 요건을 1만명 이상 5만명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완화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기구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3조).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위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55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3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 ----- -----.
이 경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1. 국회가 추천하는 <u>9명</u>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1명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	1. ----- <u>7명</u> ----- -----.
2. 대통령이 지명하는 <u>5명</u>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2. ----- <u>3명</u> -----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u>5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또는 청년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명</u>
<u><신설></u>	<u>5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u>

6. ~ 7. (생 략) ④ (생 략) ⑤ <u>국회가 제3항제1호에 따라</u> <u>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학생 또</u> <u>는 청년 2명 이상과, 학부모 2</u> <u>명 이상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u> <u>다.</u>	<u>부모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u> <u>명</u> 6. ~ 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u><삭 제></u>
--	---

국가교육위원회는 원칙적으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¹⁾, 21명의 위원은 각각 국회가 추천하는 9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교육부장관, 전국시도교육감협회의 대표자,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각각 추천하는 1명, 대한민국시도지사협회의 대표자로 구분됨.

개정안은 대통령과 국회의 위원 추천권을 각각 2명씩 줄이고 있으며, 기존에 국회 추천 위원은 학생(청년) 및 학부모를 각각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학생 또는 청년 관련 단체와 학부모 관련 단체에서 각각 2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원회의 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보다 다양한 계층의 이해와 요구가 대변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1) 2025년 4월 현재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2명과 한국교육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이 직이 공석임.

2025년 1월 고민정의원이 유사한 취지로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제2207355호)의 경우 교육부 차관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자주성·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교원·교장·교수 관련 단체 및 교육 학회의 위원 추천권을 확대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어 동 개정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안 비교 >

구 분	현행	고민정의원안	김문수의원안
국 회	9	7	7
대통령	5	3	3
교육부(차관)	1	-	1
교육감 협의체	1	1	1
교원단체	2	3	2
대교협, 전문대교협	2	2	2
시도지사 협의체	1	1	1
교장 단체	-	1	-
교수 단체	-	2	-
교육 학회	-	1	-
학생·청년 단체	-	-	2
학부모 단체	-	-	2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는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 중 학생·청년 및 학부모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현행 법률이 이미 국회 추천 위원으로 학생·청년 및 학부모 4인을 보장하고 있어 이에 따라 해당 계층의 입장이 충분히 개진되어온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안에 따라 국회가 아닌 학생·청년 및 학부모 관련 단체에서 위원 후보를 직접 추천하는 경우, 법정 기구 없이 성격이 상이한 단체가 다수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단체 간의 협의에 따른 대표성 있는 위원 후보 추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임.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 관련 단체’의 경우 대부분 지역 또는 개별학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전국 학생의 의견을 대표하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교육기본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교원 관련 단체’와 달리 ‘학생 관련 단체’는 근거 법령이 부재하며, ‘학생 관련 단체’의 구성 및 활동이 지역·개별학교마다 다양하여 위원 추천이 가능한 단체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입장임.

2.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안 제3조제6항)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⑥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단 신설> ⑦·⑧ (생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⑥ ----- ----- .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⑦·⑧ (현행과 같음)

인사청문 제도는 고위공직 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 도덕적 권위, 국정 현안에 대한 정책적 조망 등을 적극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로서,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에 대한 인사권이 편중됨에 따라 개인의 자질과 능력보다는 학연·지연에 입각한 정실인사 또는 편중인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현행 「국회법」 제46조의3²⁾은 ①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②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국회법」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다음 각 호의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1.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
2.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

같은 법 제65조의2³⁾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국무위원 등의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인사청문 실시 대상 현황 >

실시주체	대상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23인)	국회 동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13인)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소관 상임위원회 (44인)	대통령 임명 국무위원(19인),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 선거관리위원 3인, 방송통신위원장, 국가정보 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 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3) 「국회법」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2.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4),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위원장을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5)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간주되며,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등6)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것인바,

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5) 「국가재정법」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② 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위원장을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상임위원 및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에 개정안은 해당 직위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검증하고 업무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동 규정과 관련하여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경우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합의제 행정위원회로서, ①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직접적인 의안 제출권이 있는 국무위원 기관이 아닌 점, ②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국회, 정부, 교육 관련 단체 등 다양한 기관 및 분야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므로 구조적으로 내부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③ 국가교육위원회의 주된 역할이 교육비전 수립, 중장기 정책 방향의 설정 등 거시적인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된다는 입장임.

특정 직책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추가할지 여부는 해당 공직의 직급과 역할, 국정에 미치는 영향력, 현행 인사청문 제도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에 해당하는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 도입 여부 결정 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건 완화(안 제1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다.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u>1만명 이상 5만명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0조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하나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① 국회·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②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③ 위원회가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에 위원회는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으며,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 기준은 법 시행령에 따라 “9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로 운영되고 있음.

현재 국민의 요청에 따른 국민의견 수렴·조정은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의견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2024년 플랫폼을 통한 요청은 총 5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동의요건을 충족한 요청은 없었음. 2025년의 경우에도 4월 기준 접수된 요청은 총 3건에 불과하며 1건은 기간 만료, 2건에 대한 동의는 각각 1명과 3명 수준으로, 국민 요청에 따른 국민의견 수렴·조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임⁷⁾.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상의 현재 기준을 1만명 이상 5만명 이하의 범위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국민의견 수렴·조정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참고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유사한 제도로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의 경우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이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국회국민동의청원은 청원 달성 기준이 기존에 10만명이었으나 2021년 5만명으로 감축되어 운영 중임. 서울시교육청 청원의 경우 청원 등록 30일 안에 시민 1만명 또는 학생 1,000명 이상이 동의하면 교육감 또는 관계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음.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 수렴·조정 제도 운영 현실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법률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구체적인 동의요건에 관한 사항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가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법령 체계상 적절하다고 생각됨.

7)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견수렴·조정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는 국민의견 수렴·조정
 의 동의요건은 제도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정책의 유연성,
 유사 입법사례⁸⁾ 등을 고려할 때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
 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며, 동의요건 하향 조정은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
 화와 교육정책의 안정성·일관성,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중
 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참고로,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조정 요건을 과도하게 완화하는 경우에는 특정 단체의 의견을 대변
 하는 방식으로 법률 개정 취지와 달리 제도가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음.

문 의 처
02)6788-5186

8) 국민 감사청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국민동의청원: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내부 운영기준